



매치업사업 위원회 규정

제 정 일	2021. 8. 1
개 정 일	
개정차수	차
담당부서	평생교육원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매치업사업의 수행에 적용하고,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 3조 (위원회) 위원회는 매치업사업 운영위원회, 매치업사업 품질관리위원회, 매치업사업 자체평가 위원회를 둔다.
- 제 4조 (운영위원회) 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평생교육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은 교직원 및 외부인사 10인 내외로 구성하고, 평생교육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변동으로 인한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매치업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2. 사업비 운영의 집행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3. 교육과정개발, 인증평가, 출제·감수·선제에 관한 사항
 4.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
- 제 5조 (품질관리위원회) ① 매치업사업 교육의 적정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위원회를 둔다.
- ② 품질관리위원회는 평생교육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은 교직원 및 외부인사 10인 내외로 구성하고, 평생교육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변동으로 인한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④ 품질관리위원회는 교육과정 및 인증평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- 제 6조 (자체평가위원회) ① 매치업사업의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하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- ②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은 교직원 및 외부인사 5인 내외로 구성하고, 위원장 및 위원은 평생교육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변동으로 인한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④ 기타 자체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제 7조 (소집 및 의결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 8조 (사무관장) 위원회의 사무는 평생교육원에서 관장한다.
- 제 9조 (간사)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평생교육원 직원 1명을 간사로 둔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